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 기준*

홍지호 · 여영서

【국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의 이전 논문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 모순인가?”에 대한 김진형과 최훈의 반론에 대응하면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 기준으로 실현 기준보다는 의도 기준이 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이다. 그들의 반론은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최훈의 반론은 논증 재구성과 논증 분류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전제하고 있고, 김진형의 반론은 핵심적 논점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의 물음에 대해 그들이 제안한 방법도 제대로 된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들이 제안한 해법은 모두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 기준이 충족시켜야 할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고, 결국 “부당한 연역 논증은 귀납 논증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적절하게 답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논증의 분류와 평가가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지 제시하면서 의도 기준에 따른 논증 분류가 적절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다.

【주요어】 부당한 연역 논증,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 기준, 의도 기준, 실현 기준, 김진형, 최훈

투고일: 2021. 01. 04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21. 02. 11 게재확정일: 2021. 02. 26

* 이 논문은 2017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2017-04425)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1. 도입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은 의도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우리의 논문,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인가?”(2019)에 대해 최근 김진형(2019)과 최훈(2020)이 반론을 제기했다. 그들은 모두 실현 기준을 받아들일 경우 ‘부당한 연역 논증’이란 표현은 형용모순이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도 기준을 옹호하는 우리의 입장을 비판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그들의 비판이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이 지니고 있는 형용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도 제대로 된 해법일 수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이 논리 교육에 불필요하다는 최훈의 주장은 과도하다는 것을 밝히고, 논증의 분류와 평가가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¹⁾

2절에서 우리는 의도 기준을 옹호하는 우리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김진형과 최훈이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최훈의 경우 분류 개념을 애매하게 사용하는 애매어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점에서 벗어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김진형의 경우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핵심적인 논점에서 벗어나고 있다.

3절에서는 의도 기준을 옹호하는 우리의 입장에 대한 최훈의 반론에 대응할 것이다. 그는 우리가 실현 기준을 비판하고 의도 기준을 옹호할 때 논증 재구성과 논증 분류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1) 저자들은 이진희의 최근 논문 “연역, 귀납 그리고 의도”(2020)에 대해 너무 늦게 알게 되어 함께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다. 이러한 최훈의 비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증 재구성과 논증 분류가 독립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를 독립적인 과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최훈 자신도 양자를 독립적인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4절에서는 김진형과 최훈이 제안한 방법은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실현 기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이기 때문에 ‘부당한’이라는 용어를 ‘연역 논증’에 붙여 쓸 수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훈은 논증은 논리학의 영역이고 추리는 심리학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대신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에 의도 기준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김진형은 ‘연역적 논증’과 ‘귀납적 논증’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논증 분류어로 사용하면서 의도 기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고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논증 평가어로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제안들이 “부당한 연역 논증은 강한 귀납 논증일 수 있는가?”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따라서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일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5절에서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이 논리 교육에 불필요하다는 최훈의 주장을 검토할 것이다. 서로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라면,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 역시 효과적인 논리 교육의 방법일 것이다. 또 최훈의 주장처럼 오류 논증 사례를 중심으로 논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오류 논증이 왜 오류 논증인지를 명료하게 밝히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서로 다른 특징을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논증의 분류와 평가가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지 제시하면서 논증의 분류와 평가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밝힐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의도 기준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이다.

2. 의도 기준과 실현 기준

앞서 밝힌 대로, 우리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인 다음의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 중 후자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실현 기준: 전제와 결론 사이에 실현된 뒷받침 관계

의도 기준: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의도된 뒷받침 관계

김진형과 최훈은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반론에 대응하려 하는데,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두 기준이 지니는 함의를 정확하게 밝히고, 우리가 의도 기준을 더 낫다고 판단한 근거를 간략하게나마 밝히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먼저 실현 기준에 따르면, 전제와 결론 사이에 실현된 뒷받침 관계가 필연적이면 연역 논증이고 개연적이면 귀납 논증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은 형용모순이다. 타당한 논증만이 연역 논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의도 기준에 따르면,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의도된 뒷받침 관계가 필연적이면 연역 논증이고 개연적이면 귀납 논증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은 형용모순이 아니다. 의도된 뒷받침 관계가 필연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도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논의했듯이, 두 기준의 차이점은 논증 평가어와 논증 분류어 개념을 통해 잘 드러난다. 실현 기준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연역’과 ‘귀납’을 논증을 분류하는 개념이자 평가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제와 결론 사이에 필연적 뒷받침 관계가 성립하는 논증 즉 타당한 논증만을 연역 논증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바로 실현 기준의 입장인데, 여기서 ‘타당한’이라는 것은 논증을 평가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의도 기준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연역’과 ‘귀납’을 논증을 분류하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는 입장이다.²⁾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 중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둘 중 하나가 적절하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역’과 ‘귀납’을 논증 분류어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에 맞는 의도 기준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한다면 선결문제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을 형용모순이게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실현 기준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단순히 이 하나의 측면에서만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을 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논의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점에 주의하면서 논의를 전개했고, 구분 기준의 적절성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잣대로서 보울스가 제시한 다음의 세 조건을 사용했다.³⁾

(가) 망라적 배타성

(나) 평가적 개방성

2) 홍지호·여영서(2019), p. 161 참조.

3) Bowles(1994) pp. 160-161 및 홍지호·여영서(2019), pp. 162-163 참조.

(다) 평가적 효용성

이 세 조건은 보울스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 기준이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가)의 망라적 배타성 조건은 구분 기준이 모든 논증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하고 하나의 논증을 연역 논증이면서 동시에 귀납 논증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의 평가적 개방성 조건은 구분 기준이 좋은 연역 논증과 나쁜 연역 논증, 그리고 좋은 귀납 논증과 나쁜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의 평가적 효용성 조건은 구분 기준이 논증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조건 중 실현 기준을 옹호하는 이영철(2016)은 (가)와 (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나)가 의도 기준에 편향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⁴⁾ 이에 우리는 그의 판단을 존중하여 (가)와 (다)만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했다. 강조해서 말하면, 의도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는, 의도 기준은 망라적 배타성 조건과 평가적 효용성 조건을 충족시키지만 실현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김진형과 최훈도 (가)와 (다)를 잣대로 사용하는 데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론에 대응하기 위한 본 논문에서도 (가)와 (다)를 잣대로 사용하려 한다.

사실 그들의 반론에는 우리의 입장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⁵⁾ 앞서 언급한 우리의 입장에 대한 정리를 통해 그

4) 이영철(2016), p. 56 각주1 및 홍지호·여영서(2019), p. 163 참조.

5) 우리는 김진형(2019)과 최훈(2020)의 반론에 우리의 입장에 대한 오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일차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오해에 대해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오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오해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몇 가지 더 언급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우리는 ‘연역’과 ‘귀납’을 논증 분류어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의 ‘분류’를 논증의 평가 결과에 따른 분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훈은 그 점을 간과했다. 예를 들어, 최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의도 기준을 비판한다.⁶⁾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은 의도 기준에서 도대체 ‘나쁜 논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논증 제시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제시하는 논증이 타당하거나 개연적임을 의도할 텐데, 도대체 나쁜 논증을 의도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여기서 최훈은 의도 기준에 따르면 나쁜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나쁜 논증’에서 ‘나쁜’은 평가어이다. 의도 기준을 따를 때 논증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으로 분류될 뿐이다. 물론 그러한 논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나쁜 연역, 나쁜 귀납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평가 결과에 따른 논증 분류이다. 최훈은 논증의 분류와 평가를 구분해서 논의하는 우리의 논의 전개 방식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논증은 연역 논증, 귀납 논증, 나쁜 논증으로 분류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둘째, 타당성과 합당성(혹은 건전성)을 혼용해서 논의하면 안 된다. 우리 논의에서 ‘좋은 논증’과 ‘나쁜 논증’의 ‘좋은’과 ‘나쁜’은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즉, 전제 자체의 신뢰성과 관련된 평가어가 아니라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강도와 관련된 평가어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실현 기준이나 의도 기준과 관련된 논쟁은 전제

이는 우리 입장에 대한 김진형과 최훈의 좀 더 중요한 비판점에 대해 집중하여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6) 최훈(2020), p. 37.

자체의 신뢰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⁷⁾

나 역시 연역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홍지호·여영서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점을 말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 우리가 논증을 평가할 때 타당하다는 기준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타당한 연역 논증이라고 하더라도 논증으로서 적합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

최훈은 이런 주장을 통해 실현 기준의 입장도 평가적 효용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 그런데 여기서 최훈은 논점을 일탈하고 있다. 우리는 타당한 논증도 합당성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 적합하지 않은 논증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다. 일상적으로 논증을 평가할 때는 전제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실현 기준의 입장이든 의도 기준의 입장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의 차이점은 전제와 결론의 논리적 뒷받침 관계와 관련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결국 최훈은 여기서도 ‘평가’라는 용어를 애매하게 사용하는 애매어의 오류를 범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논점을 일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우리 논의의 목적은 단순히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을 형용모순이 아니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논의의 목적은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 중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적절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그런데 김진형은 이러한 우리의 논점을 ‘어떻게 ‘연역’을 형용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로 변경시키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⁸⁾ 4절에서 본격적

7) 최훈(2020), p. 34.

8) 김진형(2019), p. 102 참조.

으로 논의하겠지만, 그가 제안하는 방법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논점 즉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 중 적절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입장에 대한 사소한 오해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최훈과 김진형의 핵심적인 반론에 대해 차례로 대응해 보려 한다.

3. 논증 재구성과 논증의 분류

실현 기준의 입장을 따르든 의도 기준의 입장을 따르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게 된 특정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논증을 제대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일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논증이 제시된 맥락에 맞춰 자비의 원리에 따라 전제와 결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비의 원리란, 논증 제시자가 의도하려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논증은 연역 논증이나 귀납 논증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확인하면, 우리의 논의는 그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의도 기준과 실현 기준 중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가리기 위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의도 기준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실현 기준은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의도 기준은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논문에서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이를 보이려 했는데, 그 중 <사례5>에 대해 다시 살펴보자.⁹⁾

9) 홍지호·여영서(2019), pp. 163-165 참조.

<사례5>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바둑을 두지 못한다.

우리의 주장은, 실현 기준의 입장에서는 <사례5>를 연역 논증이나 귀납 논증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례5>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략된 전제를 찾는 논증 재구성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생략된 전제를 찾는다는 것은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논증 재구성이 불가능하다. 최훈도 이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최훈은 “실현 기준이라고 해서 논증 파악을 할 때 의도를 파악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¹⁰⁾라고 응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¹¹⁾

아마도 홍지호·여영서는 논증의 재구성과 논증 분류[평가]를 헛갈리는 것 같다. 어떤 논리학 교과서에도 논증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나오며,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자비로운 해석의 원리’를 적용하여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최대한 파악한 다음에 그 의도에 가깝게 재구성한다. ... <사례5>는 숨은 전제 (1)[모든 미국 대통령은 바둑을 두지 못한다.]이나 (2)[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바둑을 두지 못한다.]가 생략된 논증으로 본다. ... 실현 기준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는 마땅히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 끝에 재구성한 논증은 이미 전제와 결론의 뒷받침 관계가 실현된 논증이다.(밑줄은 우리의 강조)

여기서 우리는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사례5>를 <사례5-1>과 같이 재구성하면 연역 논증으로 분류할 수 있고 <사례5-2>와 같이 재구성하면 귀납 논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최훈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최훈(2020), p. 41.

11) 최훈(2020), p. 43.

<사례5-1>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모든 미국 대통령은 바둑을 두지 못한다. 따라서 트럼프는 바둑을 두지 못한다.

<사례5-2>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바둑을 두지 못한다. 따라서 트럼프는 바둑을 두지 못한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최훈은 실현 기준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사례5>를 연역 논증이나 귀납 논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최훈의 반론은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논증을 재구성하는 것이 논증 분류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그러나 그러한 논증 재구성이 논증 분류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고려해서 논증을 재구성하는 작업의 핵심은 생략된 전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생략된 전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논증 제시자가 얼마만큼의 강도로 결론을 뒷받침하려 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최훈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사례5>를 <사례5-2>로 재구성했다고 하고, 우리가 그에게 <사례5-1>이 아니라 왜 <사례5-2>로 재구성했느냐고 물어본다고 해보자. 이런 물음에 대해 그는 어떻게 답변하게 될까? 그 답변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 중의 하나는, 뒷받침 강도에 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일 것이다. 즉, <사례5>가 제시된 맥락을 고려할 때, 논증 제시자의 의도는 연역적이라기보다는 귀납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뒷받침 강도와 관련하여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면, <사례5-2>로 재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논증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논증을 연역이나 귀납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례5>를 <사례5-1>로 재구성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의도 기준에 따라 <사례5>를 연역 논증으로 분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논증 재구성과 논증 분류가 독립적인 과정이라는 주장에 근거했던 최훈의 반론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최훈 자신도 논증 재구성과 논증 분류를 독립적인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¹²⁾

앞서 홍지호·여영서는 실현 기준이 논증 재구성의 과정에서 의도를 파악해야 하기에 실현 기준이 의도 기준을 들여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그들은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짐작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논증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곧 실현 기준을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례5-1>과 <사례5-2>가 서로 다른 종류임을 인정하는데, 그래야만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 두 논증이 서로 다른 종류라는 것은 전제와 결론 사이에 실현된 뒷받침 관계로 아는 것이지 의도로 아는 것이 아니다.(밑줄은 우리의 강조)

여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훈이 논증 재구성 과정에서 논증 분류를 위한 실현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최훈도 논증 재구성과 논증 분류의 과정을 독립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최훈의 생각을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다. 최훈은 객관적인 논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곧 실현 기준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논증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실현 기준에 따라 논증을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논증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의도 기준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과

12) 최훈(2020), p. 46.

정이다. 논증 재구성 과정에서 논증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실현 기준이나 의도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해주는 것일 수 없다.

이제 김진형의 반론 및 그가 제시하는 해법에 대해 논의해 보려 한다. 이를 통해 김진형이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4.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와 해법들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논리학 교재는 다음과 같은 논증 분류표를 제시한다.¹³⁾

	논증			
분류	연역 논증		귀납 논증	
평가	타당한 연역 논증	부당한 연역 논증	강한 귀납 논증	약한 귀납 논증

이러한 논증 분류표를 놓고 볼 때, ‘부당한 연역 논증’이 형용모순이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는 듯이 보인다. 여기에는 연역 논증이나 귀납 논증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증 분류표에 근거하여 특정 논증이 연역 논증인지 귀납 논증인지 구분하고 평가해 보라는 문제를 접한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한다. 이 분류표에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명확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논증이 부당한 연역 논증인지 귀납 논증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정의 및 양자의 분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논문에서 우리는 그 기준으로 실현 기준보다는 의도 기준이 적

13) 김희정·박은진(2008), 이병덕(2015), 최원배(2019) 참조.

절하다고 주장했다.

실현 기준을 받아들이는 이영철과 새먼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정의를 포함한 다음의 논증 분류표를 받아들일 것이다.¹⁴⁾

	논증		
분류	연역 논증	귀납 논증	나쁜 논증
정의	타당한 논증	강한 논증	부당하거나 약한 논증
평가	연역 논증	귀납 논증	나쁜 논증

이 논증 분류표를 보면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은 형용모순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은 연역 논증의 정의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에 익숙한 학생들이 이 논증 분류표를 보면 “부당한 연역 논증은 귀납 논증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부당한 논증도 강한 논증일 수 있는데, 그럼 그것은 귀납 논증의 정의에 부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이 논증 분류표가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비롯하여 보울스가 제시한 조건들에 근거하여 실현 기준보다는 의도 기준을 받아들

14) 우리가 지난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이영철과 새먼은 논증을 연역 논증, 귀납 논증, 그리고 나쁜 논증으로 구분하며, 전제와 결론 사이에 타당성이 성립하면 연역 논증, 개연적 뒷받침이 성립하면 귀납 논증, 그리고 타당성도 개연적 뒷받침도 성립하지 않으면 나쁜 논증이라고 규정한다. 그들에게 있어 ‘연역’, ‘귀납’, 그리고 ‘나쁜’은 논증을 분류하는 용어인 동시에 평가하는 용어인 셈이다. 최훈은 자신의 논문 요약문에서까지 우리가 이러한 구분을 취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디서도 우리가 이런 구분을 옹호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홍지호·여영서(2019), 이영철(2016), 새먼(2004), Salmon(1973) 참조.

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고, 조금 전에는 우리의 주장에 대한 최훈의 반론에 대응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도 기준에 따른 정의를 포함하는 다음의 논증 분류표를 살펴보자.

	논증			
분류	연역 논증		귀납 논증	
정의	타당성을 의도한 논증		강한 뒷받침을 의도한 논증	
평가	타당한 연역 논증	부당한 연역 논증	강한 귀납 논증	약한 귀납 논증

이 논증 분류표에 근거하면, 타당성을 의도한 논증이 그 의도에 성공했다고 판단될 경우 타당한 연역 논증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의도에 실패했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한 연역 논증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이 아니게 된다. 또한 “부당한 연역 논증은 귀납 논증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김진형의 해법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연역’이 애매어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즉 ‘연역’이 논증 분류어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논증 평가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당한 연역 논증’이 형용모순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진단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가 제시한 해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의 해법은 ‘연역적 논증’과 ‘귀납적 논증’을 새로운 논증 분류어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제 그가 제안한 다음의 논증 분류표를 살펴보자.¹⁵⁾

15) 김진형(2019), p. 104. 이러한 논증 분류표로 제시된 김진형의 해결책이 ‘연역’과 ‘귀납’을 쓸모없는 용어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그 비판은 잘못됐다(김진형(2019), p. 104 각주8). 분류표에서 드러나듯이, 김진형의 해결책에서 연역은 타당한 논증과 같은 뜻이 아니라 타당한 연역적 논증과 같은 뜻이고 귀납은 강한 논증과 같은 뜻이 아니라 강한 귀납적 논증과

분류	논증			
	연역적 논증		귀납적 논증	
평가	타당한 논증	부당한 논증	강한 논증	약한 논증
분류 평가	연역 논증		귀납 논증	

이 논증 분류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연역 논증을 타당한 연역적 논증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타당한 연역적 논증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당한 연역적 논증만 있을 뿐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김진형의 해법이다. 그는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를 형용 모순의 문제라고 부르며 다음처럼 주장한다.¹⁶⁾

... 형용모순의 문제는 우리가 특히 교실에서, ‘타당하지 않은 (invalid)’ 논증을 (종종 부지불식간에) ‘연역’으로 부르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이상의 논의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정말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다. 김진형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연역적 논증과 귀납적 논증의 정의는 무엇인가? 김진형은 이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그가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통해 그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뜻이다.

16) 김진형(2019), p. 105.

이는 그가 “필자는 [‘연역적 논증’이나 ‘귀납적 논증’과 같은] 새 용어의 도입과 그에 의거한 이 [논증 분류표와 같은] 해석이 앞의 인용에 담긴 홍지호 측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¹⁷⁾ 여기서 ‘홍지호 측의 취지’란 간단히 말해 의도 기준에 대한 옹호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연역적 논증과 귀납적 논증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의해 보자.

연역적 논증 = df. 타당한 뒷받침을 의도한 논증

귀납적 논증 = df. 개연적 뒷받침을 의도한 논증

이러한 정의와 김진형의 논증 분류표에 근거하면, 연역 논증은 타당한 뒷받침을 의도했고 실제로도 타당한 논증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연역 논증에 대한 김진형의 정의에는 논증 제시자의 의도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실현 기준을 옹호하려는 김진형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부당한 연역적 논증에 대해 생각해 보자. 김진형에 따르면 부당한 연역적 논증은 연역 논증이 아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부당한 연역적 논증은 귀납 논증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김진형의 논증 분류표에 따를 때 귀납 논증은 귀납적 논증의 하위 범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보울스의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떠올릴 수 있다. 만일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 기준이 지켜야 할 조건으로 인정한다면, 결국 김진형의 논증 분류표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 귀납적 논증의 경우는 어떨까? 귀납적 논증의 정의와 김진형의 논증 분류표에 근거하면, 개연적 뒷받침을

17) 김진형(2019), p. 104.

의도한 논증 중 실제로 그러한 뒷받침에 성공한 논증이 귀납 논증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에 실패한 귀납적 논증은 귀납 논증이 아니다. 그럼 그 논증은 연역 논증일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도 김진형의 논증 분류표는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쯤에서 강조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당한 연역 논증’이 형용모순이 아니게 만들어 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목적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해 줄 적절한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진형은 실현 기준이 옳다는 점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에 접근했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둘 정도이다.¹⁸⁾ 하나는 “전건 긍정식이 실제로 따르는 규칙을,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아닌 바로 ‘연역’ 규칙으로 부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 기준을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타당한 논증 형식과 관련된 규칙을 ‘연역’ 규칙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타당한 논증만을 연역 논증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 연역 규칙을 따르는 논증을 타당한 연역 논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논증을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런 점만 고려해 보아도, 타당한 논증 형식과 관련된 규칙을 ‘연역’ 규칙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실현 기준을 옹호하는 근거이기 힘들다.

김진형이 실현 기준을 옹호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의도 기준이 실현 기준에 개념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도 기준이 실현 기준에 개념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실현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타당성’, ‘필연성’, ‘개연성’ 등의 개념이 의도 기준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성만으로

18) 김진형(2019), p. 103.

실현 기준이 더 적절한 기준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문제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 여부를 가리기 위해 우리는 보울스의 망라적 배타성 조건과 평가적 효용성 조건을 근거로 논의했고, 그 논의의 결론은 의도 기준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김진형은 그런 식의 논의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김진형은 우리의 핵심적인 논점에서 벗어나 ‘부당한 연역 논증’이 형용모순이 아니게 만들어 주는 해법을 제시했지만, 그 해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 기준보다 실현 기준이 더 낫다는 것을 보이는 데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에 대한 최훈의 입장을 검토해 보자. 그는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실현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연역’이나 ‘귀납’과 관련하여 의도 기준을 사용하려면 ‘연역 논증’이나 ‘귀납 논증’이라는 말보다 ‘연역 추리’나 ‘귀납 추리’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다. 그렇게 하면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제안을 직접 살펴보자.¹⁹⁾

나는 홍지호·여영서가 말하는 논증 평가로서의 연역과 귀납도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로 부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것은 논증을 제시하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연역이나 귀납이라고 생각할 때의 심리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논증 분류어로서의 연역과 귀납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이라고 하면 될 텐데 이것은 지금도 쓰고 있는 용어이다. ... ‘연역 추리’라는 용어의 장점은 ‘부당한 연역 추리’가 홍지호·여영서의 의도대로 전혀 형용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리학자의 추리가 좋은 논증과 나쁜 논증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추리를 연구 대상으로 하듯이 연역 추리도 연역 논증(곧 타당한 연역)뿐만 아니라 연역 논증을 의도했지만 실제로는 연역 논증이 아닌 논증(이른바 ‘부당한 연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것이다.

19) 최훈(2020), pp. 49-50.

과연 이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최훈이 ‘추리’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것은 의도 기준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역 추리 =df. 타당한 뒷받침을 의도한 사고 과정

귀납 추리 =df. 개연적 뒷받침을 의도한 사고 과정

최훈의 제안은 이러한 ‘연역 추리’에 ‘부당한’이라는 표현을 붙여도 형용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최훈은 연역 추리에는 타당한 연역 추리와 부당한 연역 추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그럼, 최훈은 나쁜 추리를 어떻게 정의할까? 나쁜 추리란 적절한 뒷받침이 성립하지 않는 추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추리를 의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훈은 연역 추리나 귀납 추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나쁜 추리를 정의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도 부당한 연역 추리나 약한 귀납 추리를 나쁜 추리로 평가하면서 분류할 것이다.

그럼, 연역 추리와 연역 논증의 관계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추리를 언어화한 것을 논증이라고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타당한 연역 추리를 언어화한 논증은 타당한 연역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부당한 연역 추리를 언어화한 논증은 무엇일까? 최훈은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고 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실현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부당한 연역 논증’을 형용모순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영철이나 켈먼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부당한 연역 추리를 나쁜 추리로 분류하고 그것을 언어화한 논증을 나쁜 논증으로 분류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생각에

기초한 다음의 분류표를 살펴보자.

	추리			
분류	연역 추리		귀납 추리	
평가	타당한 연역 추리	부당한 연역 추리	강한 귀납 추리	약한 귀납 추리
	좋은 추리	나쁜 추리	좋은 추리	나쁜 추리
	논증(추리에 대한 언어화)			
분류 평가	연역 논증	나쁜 논증	귀납 논증	나쁜 논증
정의	타당한 논증	부당한 논증	강한 논증	약한 논증

이 분류표에 근거하면,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은 형용모순이지만 ‘부당한 연역 추리’라는 말은 형용모순이 아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 분류표에서 부당한 연역 추리를 언어화한 논증은 나쁜 논증일 뿐 연역 논증이 아니다. 그러나 그 논증은 전제가 결론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강한 논증일 가능성이 있다. 부당한 논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약한 논증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 논증은 확실히 부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한 논증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어 있다. 따라서 비가 왔다.

이 논증은 강한 논증이기 때문에 귀납 논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부당하기 때문에 나쁜 논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위의 분류표는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않고, 따라서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최훈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연역 추리를 이용하여 나쁜 논증을 설명하는 것을 하나의 대응 방법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즉, 부당한 논증으로서의 나쁜 논증은 부당한 연역 추리를 언어화한 것이기 때문에 귀납 추리를 언어화한 귀납 논증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훈은 이렇게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대응하려면 ‘논증’에 대한 정의항에 ‘추리’가 포함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최훈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귀납 논증은 귀납 추리를 언어화한 것인 동시에 강한 논증이고, 연역 논증은 연역 추리를 언어화한 것인 동시에 타당한 논증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그러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역 추리를 정의하는 데 의도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역 논증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도 의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훈은 실현 기준을 옹호하고 있다. 즉, 의도를 끌어들이면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려는 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훈은 부당한 연역 추리를 언어화한 논증을 나쁜 논증으로 분류해야 할지 귀납 논증으로 분류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 최훈의 해법도 김진형의 해법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연역 논증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아닌 것이다.

5.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과 논리 교육

최훈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 기준에 대한 논의를 넘어

서 그러한 구분이 논리 교육에 불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펼친다. 그 근거는, 논증을 제시하거나 평가하는 데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최훈의 말을 직접 살펴보자.²⁰⁾

... 교양 논리학 또는 실용 논리학 수업에서 연역과 귀납의 구분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그 수업은 성공적인 논증을 만들고 상대방의 논증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연역과 귀납을 구분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에도 논증을 학습하면서 연역과 귀납의 구분이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쓸모가 있을까?

나는 회의적이다. 연역과 귀납의 구분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비형식 논리학자인 고두가 적극적으로 펼쳤는데, 나는 철학에서도 그 구분은 필요 없다는 주장을 빼고는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논증을 평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제가 결론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과 맥락에서 적절한 정도로 충분히 뒷받침하느냐이다. 연역과 귀납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최훈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이 논증 학습에 쓸모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제시했는데, 그 주장은 그러한 구분을 가르치지 않고서도 논리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과격한 것이다. 즉, 그러한 구분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인 논리 교육의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논증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연습 과정에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특징을 구분하여 배우는 것이 쓸모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성취 가능한 수준의 학습을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의 현실적 목표라면, 효율적인 교육 방법은 대개 서로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분류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성인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면서 명사와 동사를 구분해서 가르치고 평서문과 의문문 등의 문장 종류를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

20) 최훈(2020), pp. 51-52.

은, 그러한 구분이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기 때문이다.²¹⁾ 고등학생에게 논설문과 설명문 등 글의 종류를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 역시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다. 그러한 구분 없이 교육한다고 해서 교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을 가르치는 것이 쓸모 있고 효율적인 논리 교육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이 구분되고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훈의 주장처럼 오류 논증 사례를 중심으로 논리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그렇게 논리 교육이 진행된다고 해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을까? 최훈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을 직접 보자.²²⁾

교양 논리학 수업에서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오류이다. 그런데 오류를 가르칠 때 연역과 귀납의 구분이 필요한가? 어떤 논증이 선결문제를 요구하고 있는지,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 논증이 연역인지 귀납인지 알 필요가 없다. 성급한 일반화 논증은 귀납 논증의 오류로 가르쳐지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결론을 뒷받침하기에는 전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연역 논증이 아님을 알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래저래 연역과 귀납의 구분은 배울 필요가 없다.

21) 성인과 달리 어린이에게 외국어를 가르칠 때는 대개 저절로 습득하도록 한다. 문법을 먼저 가르치는 식의 명시적인 교육 방법이 어린이에게는 오히려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고,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외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습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인에게 외국어를 가르칠 때는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문법을 먼저 가르치는 명시적인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지 않고 논리 교육을 하는 것은 성인 학습자를 어린이 가르치듯 접근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22) 최훈(2020), pp. 52-53.

하지만 연역 논증의 오류, 대표적으로 전건 부정의 오류와 후건 긍정의 오류는 연역 논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고서 어떻게 오류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후건 긍정의 오류로 판단되는 사례를 연역 논증을 제시한 사례로 분류하기 이전에 평가한다면 그것은 강한 귀납 논증일 수 있다. 후건 긍정의 오류를 저지르는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분류하지 않고서 어떤 사례가 후건 긍정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귀납 논증의 특징을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나 과도된 생생함의 오류, 은폐된 증거의 오류를 오류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당장 떠오르는 이러한 의문들이 아니더라도 오류 논증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논리 교육의 전부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논리 교육에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앞서 최훈의 말 그대로 논리 교육은 “성공적인 논증을 만들고 상대방의 논증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데, 그러려면 오류 논증 사례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좋은 논증 사례를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좋은 논증 사례를 보여주려면, 좋은 연역 논증과 좋은 귀납 논증을 구분해서 제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다. 최훈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비형식 논리학자 고두도 타당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²³⁾ 이렇게 좋은 논증이라는 말의 ‘좋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논리 교육의 핵심이기도 하다.²⁴⁾

23) 고두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것이 논리 교육에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고두는 그 구분이 논리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분이라는 주장에 반대할 뿐이다. 고두는 맥락에 의존하는 대개의 논증 평가 과정에 그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고두는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 전통적인 논리학의 실제 사용 방식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다. Goddu(2001) p. 7 참조.

24) 최훈은 논리 교육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 교육에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6. 논증의 분류와 평가 그리고 자비의 원리

우리는 이전 논문에서 “의도 기준에 따르면, 논증에 대한 평가는 논증을 분류한 다음에 수행되는 것이다.”²⁵⁾라고 하여 우리가 논증의 분류와 평가를 독립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하지만 두 과정이 독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논증 분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논증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논증 제시자가 어떤 논증을 제시하려 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의 논증을 그럴듯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자비의 원리를 베풀어야 하고, 자비의 원리를 제대로 베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구성 결과물에 대한 논증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접한다고 해 보자.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갔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에 틀림없다.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문제의 초점은 비판적 사고 교육이 정확하게 무엇인가가 되는데, 그 해석은 다양할 수 있기에 최훈의 입장을 옹호하는 방법이 없지 않을 수 있다. 이진희(2020)의 최근 분석처럼, “비판적 사고를 주로 연구하는 학자들 중 상당수는 기존의 논리학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그들은 기존의 논리학과는 다른 논증 및 논증평가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타당성’이나 ‘개연성’과 같은 논리학적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비판적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진희가 결론짓듯이 논리학과 비판적 사고를 별도의 교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비판적 사고에서 논리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적 사고 교육에서도 논리학의 기초 개념을 가르치는 것의 효용을 부정할 수 없는데, 논리학의 기초 개념에 해당하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이 논리 교육에서 그 쓸모를 찾기 어렵다는 최훈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25) 홍지호·여영서(2019), p. 161.

이 사례에서 우리는 논증 제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를 통해, 첫째 문장에 근거해 둘째 문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논증에 사용된 표현, 이 논증이 제시된 맥락, 논증 제시자가 가졌을 법한 배경 지식 등을 고려하면서 논증 제시자가 연역적 의도를 가졌는지 귀납적 의도를 가졌는지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틀림없다’라는 표현을 보고 논증 제시자가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간다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과 같은 배경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 논증을 연역 논증으로 분류하고 타당하다고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논증 재구성 과정에서 논증에 대한 분류와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논증 제시자가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이 지구 온난화 현상의 충분조건이라기보다는 필요조건이라는 배경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아마도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된다면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것을 생략된 전제로 파악하여 논증을 재구성하면서 이 논증은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논증에 대한 분류와 평가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논증 평가자인 우리가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잘못 판단했을 수 있다. 즉, 귀납적 의도를 가졌지만 연역적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논증 제시자가 ‘틀림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명시적인 전제와 생략된 전제가 결론을 반드시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비의 원리를 베풀어야 한다. 즉, 논증 제시자가 귀납적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하면서 이 논증을 귀납 논증으로 분류하면서 재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재평가 역시 전제와 결론의 논리적 뒷받침 관계에 대

한 재평가이다. 즉,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갔다는 것과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될 경우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것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뒷받침해 주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일반화하면, 논증의 분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차례대로 따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²⁶⁾

1. 논증 제시 여부 확인
2. 뒷받침 강도에 대한 의도 파악
 - 2-1. 연역적 의도로 판단되면, 연역 논증으로 분류하여 평가
 - 2-1-1. 타당하다고 평가되면, 타당한 연역 논증으로 분류
 - 2-1-2. 부당하다고 평가되면, 자비의 원리에 입각해 숨은 전제의 유무 여부 점검
 - 2-1-2-1. 숨은 전제를 포함해 타당하다고 평가되면, 타당한 연역 논증으로 분류
 - 2-1-2-2. 숨은 전제를 포함해도 부당하다고 평가되면, 의도 재점검
 - 2-1-2-2-1. 연역적 의도가 분명하면, 부당한 연역 논증으로 분류

²⁶⁾ 누군가는 여기서 우리의 입장이 평가적 효용성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긴 하지만, 한 논증을 연역 논증으로도 분류하고 귀납 논증으로도 분류하는 셈이어서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은 옳지 않다. 우리의 입장은 한 논증을 두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비의 원리에 입각해 한 논증이 두 종류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해야 할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강조한 것은 논증 재구성 과정에서 논증의 분류와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며, 그러한 과정은 자비의 원리에 입각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논증 평가자가 논증에 대한 분류나 평가 작업에서 실수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작업은 자비의 원리에 입각해 최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 2-1-2-2-2. 귀납적 의도로 판단되면, 2-2로 넘어감
- 2-2. 귀납적 의도로 판단되면. 귀납 논증으로 분류하여 평가
 - 2-2-1. 강하다고 평가되면, 강한 귀납 논증으로 분류
 - 2-2-2. 약하다고 평가되면, 자비의 원리에 입각해 숨은 전제의 유무 여부 점검
 - 2-2-2-1. 숨은 전제를 포함해 강하다고 평가되면, 강한 귀납 논증으로 분류
 - 2-2-2-2. 숨은 전제를 포함해도 약하다고 평가되면, 약한 귀납 논증으로 분류
- 2-3. 연역적 의도인지 귀납적 의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자비의 원리에 입각해 2-1이나 2-2에서 시작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논증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것은 논증의 분류와 평가가 서로 독립적인 과정이 아님을 보여주며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의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참고문헌

- 김진형(2019), “연역과 귀납의 구분 기준에 관한 논쟁에 대해”, 『철학적 분석』 42, pp. 97-119.
- 김희정·박은진(2008), 『비판적 사고를 위한 논리』, 아카넷.
- 새먼(2004), 『논리학(전정판 2판)』 (곽강제 옮김), 박영사.
- 이병덕(2015), 『논리적 추론과 증명』, 이제이북스.
- 이영철(2016) “연역과 귀납의 구분 기준에 관하여”, 『철학연구』 115, pp. 55-79.
- 이진희(2020), “교양 교육으로서의 비판적 사고와 논리 교육”, 『교양교육연구』 14(4), pp. 189-200.
- 이진희(2020), “연역, 귀납 그리고 의도”, 『철학사상문화』 34, pp. 239 - 263.
- 최원배(2019), 『논리적 사고의 기초』, 서광사.
- 최훈(2020),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이다!”, 『논리연구』 23(1) pp. 25-53.
- 홍지호·여영서(2019),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인가?”, 『논리연구』 22(1), pp. 151-182.
- Bowles, G.(1994), “The deductive/inductive distinction,” *Informal Logic* 16, pp. 159-184.
- Goddu G. C.(2001),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Distinction in Logic,”*Informal Logic* 22, pp. 1-17.
- Salmon, W. C.(1973), *Logic*, New Jersey: Prentice-Hall.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University College, Sungkyunkwan University

jihohong@skku.edu

동덕여자 대학교 교양대학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Dongduk Women's
University

yyeo@dongduk.ac.kr

The Distinction between Deductive and Inductive argument

Jiho Hong · Yeongseo Yeo

This paper aims to defend once again that deductive and inductive arguments should be distinguished by the intention criterion rather than the realization criterion. This claim of ours was presented in our former paper “Is ‘invalid deductive argument’ an Oxymoron?”(2019) and criticized by Jin Hyeong Kim(2019) and Hoon Choi(2020). We argue that their criticisms are mostly based on misunderstandings and their arguments make logical fallacies. Choi’s criticism is based on a false claim that argument reconstruction and argument classification are independent, and Kim’s criticism is off the main argument of ours. Their response to the problem we raised cannot be a solution to the problem either. The following two reasons can be given. One is that their solutions do not satisfy the criterion that the distinction should, if possible, be both exclusive and exhaustive. The other is that their solutions fail to provide a proper answer to the question “Can an invalid deductive argument be an inductive argument?” Lastly, we present how argument classification and argument evaluation proceed, and this presentation will show that the intention criterion

Key Words: invalid deductive argument, Distinction between Deductive and Inductive argument, intention criterion, realization criterion, Jin Hyeong Kim, Hoon Choi